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개인형 이동장치의 종류를 법률에 명시〉

■ 김희정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6141호)

2026. 3.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전 문 위 원 나 아 정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김희정의원 등 11인
2. 제안연월일 : 2026. 1. 19.
3. 회부연월일 : 2026. 1. 20.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인 것으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 자전거 등 다양한 형태의 개인형 이동장치가 보급됨에 따라, 이들 장치가 개인형 이동장치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와 장치 종류별 안전관리 기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요구되고 있으나, 현행법에서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범위를 하위법령에 위임하고 있어 구체성과 예측 가능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개인형 이동장치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장치의 범위를 명확히 하며, 개인형 이동장치의 종류별로 안전관리 및 교통질서 유지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려는 것임 (안 제2조제19호의2).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조의3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종류를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19. (생략) 19의2. “개인형 이동장치”란 제19호나목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인 것으로서 <u>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u> 을 말한다.	제2조(정의) ----- -----. 1. ~ 19. (현행과 같음) 19의2. ----- ----- -----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안전확인의 신고가 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설> <신설> <신설>	가. 전동킥보드 나. 전동이륜평행차 다.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 라.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
<신설> 20. ~ 35. (생략)	20. ~ 35. (현행과 같음)

현행 「도로교통법」 제2조제19호의2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원동기

장치자전거 중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인 것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3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로 규정¹⁾하고 있음.

【 도로교통법상 개인형 이동장치의 종류 】

개인형이동장치에 해당되는 교통수단			개인형이동장치에 해당하지 않는 교통수단 (일반 원동기장치 자전거로 분류)		
① 전동킥보드	② 전동이륜 평행차	③ 전기자전거 (스로틀방식)	④ 전동 외륜 / 이륜보드		⑤ 전동 스케이트보드
					

※ 자료: 경찰청

이와 같이 개인형 이동장치는 현행법 체계상 하위법령을 통해 그 범위가 구체화되어 왔으며, 이에 따라 특정 기종의 포함 여부가 시행규칙에 의해 정해지는 구조를 취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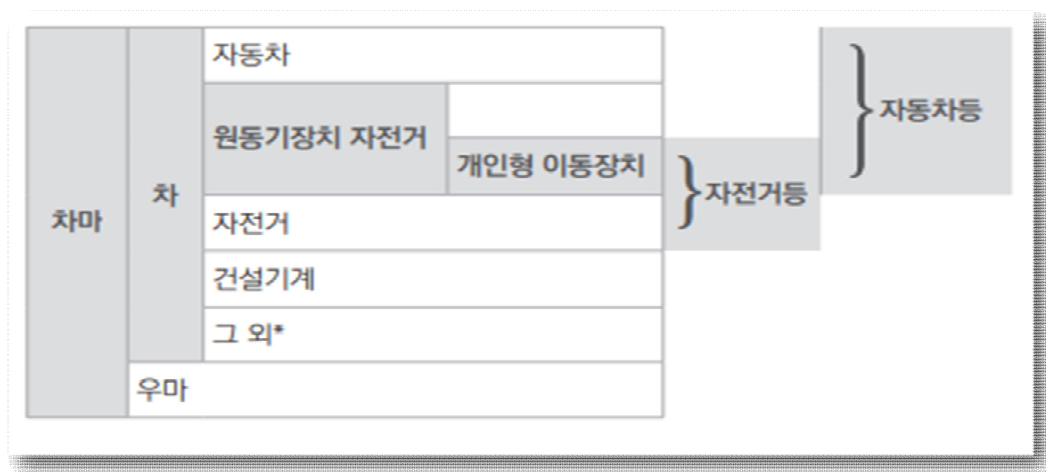
한편, 개인형 이동장치는 도로교통법 체계상 다양한 개념 범주와

1) 제2조의3(개인형 이동장치의 기준) 법 제2조제19호의2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안전확인의 신고가 된 것을 말한다.

1. 전동킥보드
2. 전동이륜평행차
3.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

연동되어 규율되고 있어 다층적인 규제를 적용받고 있음. 즉, 개인형 이동장치는 「도로교통법」상 ‘차’ 및 ‘차마’의 개념에 포함되며, 동시에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관련 규정이 적용됨. 아울러 별도로 정의된 ‘개인형 이동장치’로서의 특칙²⁾도 함께 적용됨.³⁾

[개인형 이동장치의 도로교통법 상 적용 범위]



※ 그림 : 한국교통연구원

- 2) 통행방법(자전거도로 통행 원칙 등, 법 제13조의2제1항)이나 개인형 이동장치 벌칙(음주운전에 대한 중벌 배제 규정, 법 제148조의2제1항)에 관한 특칙 등이 적용됨.
- 3) 17. “차마”란 다음 각 목의 차와 우마를 말한다.
 - 가. “차”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1) 자동차
 - 2) 건설기계
 - 3) 원동기장치자전거
 - 4) 자전거
 - 5) 사람 또는 가축의 힘이나 그 밖의 동력(動力)으로 도로에서 운전되는 것. 다만, 철길이나 가설(架設)된 선을 이용하여 운전되는 것, 유모차, 보행보조용 의자차, 노약자용 보행기, 제 21호의3에 따른 실외이동 로봇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구·장치는 제외한다.
 19. “원동기장치자전거”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를 말한다.
 - 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이륜자동차 가운데 배기량 125cc 이하(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최고정격출력 11킬로와트 이하)의 이륜자동차
 - 나. 그 밖에 배기량 125cc 이하(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최고 정격 출력 11킬로와트 이하)의 원동기를 단 차 (「자전거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전기자전거)는 제외한다.
 - 19의2. “개인형 이동장치”란 제19호나목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km/h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 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차체 중량이 30kg 미만인 것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1. “자동차등”이란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말한다.
 - 21의2. “자전거등”이란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를 말한다.

이에 따라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는 도로 통행방법, 안전장구 착용, 운전면허 요건, 음주운전 금지 등 개인형 이동장치와 관련된 제반 규정을 종합적으로 준수하여야 함. 결국 해당 장치가 「도로교통법」상 어떠한 법적 범주에 속하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규제의 범위와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며, 이러한 점에서 개인형 이동장치의 정의 및 범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는 이용자의 권리·의무 범위를 확정하는 문제와 직결된다고 할 수 있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행법이 개인형 이동장치의 구체적 범위를 행정안전부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는 것과 달리, 개정안과 같이 주요 유형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것은 국민의 권리·의무와 밀접한 사항을 법률로 정하도록 하는 법률유보원칙에 보다 부합하는 조치로 판단됨. 또한, 수범자인 국민의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고 법적 안정성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 입법적 의의가 인정됨.

다만, 다음과 같은 사항은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개정안은 전동킥보드 등 주요 유형을 명시하면서도 ‘라’목을 통해 행정안전부령에 추가적인 위임 근거를 두고 있는데, 이는 향후 등장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이동장치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장치로 이해됨.

다만 ‘하위법령 위임에 따른 예측 가능성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자 한 입법 취지가 실질적으로 구현되기 위해서는, 하위법령에 위임

하는 범위와 기준을 법률에서 보다 명확히 정할 필요가 있음. 위임 내용이 추상적이거나 광범위할 경우 개인형 이동장치의 범위가 다시 하위법령에 의해 사실상 결정되는 구조가 되어 입법 취지가 약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보완적 검토가 요구됨.

문 의 처
02) 6788-5344